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 ※ **공급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지구단위계획 등 사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69호('25.11.24)]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낙찰 후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LH)에 귀속**되므로 현장 답사 및 지구단위계획, 첨부도면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토지

용도	블록	획지	예정지번	면적(m ²)	공급예정금액(원)	최고층수/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입찰보증금	납부조건	공급방법
근린생활시설	근생6	-1	오정동 216-1	996	5,517,840,000	8층 이하/ 준주거지역	60% /300%	입찰금액의 5%이상 *공급예정금액 아님	3년 유이자	일반 경쟁 입찰
	근생6	-2	오정동 216-2	1,195	6,548,600,000					
	근생6	-3	오정동 216-3	1,208	6,619,840,000					
	근생7	1	오정동 217-1	1,520	8,314,400,000					
	근생7	-4	오정동 217-4	1,422	8,176,500,000					

토지사용가능시기

2027.12.31. (예정)

-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공사여건 및 기반시설 설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 및 도면 등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급공고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거나 공급예정가격 미만의 입찰가격을 기재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계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필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동인증서(인터넷뱅킹용, 증권용 사용불가)**가 필요하오니, 입찰 신청 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개인 또는 법인]

- ① 1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②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건 이상 중복신청 불가
 - 동일인 여부는 개인 및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으로 판단
 -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 법인의 대표(공동대표, 각자대표 등)를 겸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인으로 간주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인터넷 및 모바일만 가능)

구분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	낙찰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6.11.03.(화) 10:00 ~ 17:00	2026.11.03.(화) 17:30	2026.11.03.(화) 18:00 이후	2026.11.16.(월) ~ 11.19.(목) 10:00~16:00 (12:00~13:00 제외)
장소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LH계양부천사업본부 1층 보상판매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부간선로248)

※ **신청일 마감시간[2026.11.03(화) 17:00]까지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서 제출 시 신청건별로 별도 부여**됩니다.

- ①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모바일청약서비스(LH청약플러스 App)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개별 신청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③ 상기일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개찰결과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공통사항

- ① 신청접수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가능하며, (우편 및 현장 신청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 ②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동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 작성 및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③ 개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 시 법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④ **1인(법인)이 복수의 필지에 입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에 기재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공동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⑥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 ⑦ 공동신청인(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신청)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입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중 1개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인(법인)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 필지에 법인명의로와 개인명의로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시 **입찰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⑧ 입찰신청의 자세한 청약절차, 공동인증서 발급, 대표자 선임계 작성, 분양유의서 및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자료 및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자료실의 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⑨ 입찰 신청 시와 계약체결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⑩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청약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관련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청약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 입금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신청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LH 청약플러스 입찰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범용**) 로그인 ▶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 지구 및 지번조회(신청토지 선택) ▶ LH청약플러스 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동의 ▶ 유의사항 확인 ▶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동신청 시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 전자서명) ▶ 접수증 확인 및 출력(가상계좌 부여) ▶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 LH청약플러스 시스템 장애 발생 및 관련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유의사항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입찰 신청 시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 마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이 납부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될 경우 합산되지 않음)**
- ② LH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개찰은 공고된 일시에 LH 내부 판매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입찰금액은 100원 단위까지 작성가능)
- ④ 개찰은 **전자개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찰 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개찰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부간선로248 1층/개찰참관 사전예약 ☎032-721-2027)로 내방하시기 바라며,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 책임하에 개찰이 진행됩니다.
※ 개찰 참관 시 지참서류 : 접수증(공급신청 후 LH청약센터에서 출력가능), 신분증
- ⑤ 개찰결과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반환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계좌	입찰신청서 접수 시 건별로 가상계좌 개별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LH청약플러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되면 건별 가상계좌 자동부여

- ①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기재된 납입계좌에 신청인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명의로 입금하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하거나 납부기한 이후에 입금한 경우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②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입금된 금액만 계좌별로 합산하며 납부기한 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금액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④ 동일인(법인)이 2필지 이상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건별로 별도의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한 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분할이나 입금의 취소 또는 여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산 등은 불가하오니 입금 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민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납부기한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⑥ 신청자 거래 은행의 송금시간 기준이 아닌 가상계좌 은행에 입금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송금과 입금시간의 오차를 감안하시어 마감시간에 임박한 송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②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신청 접수 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공동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개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③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지정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에 대한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합니다.
- ⑤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전자개찰 이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 5%를 초과하여 입금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5%를 초과한 금액 전부가 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기간 내에 미계약시 일체의 예외 없이 귀속처리 되오니 반드시 신중하게 입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신청 유의사항 및 공고내용 등에 비추어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안내

▶ 계약일정 및 장소

계약일정	계약장소
2026.11.16.(월) ~ 11.19.(목) 10:00~16:00 (12:00~13:00 제외)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부간선로248, 1층)

▶ 계약금 납부

계약금 납부계좌 : 당첨(낙찰자)결과 게시 시 LH청약플러스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

- ① 계약금 납부계좌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계약보증금 입금 시에는 반드시 낙찰자(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이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구비서류[공급공고일(2026.10.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제출서류
공통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개인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2026.10.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③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22.02.28.)에 따라 수도권외 토지거래가격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토지 계약 시 매수자는 작성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반드시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납부조건 : 3년 유이자 분할납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계약 시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후	30개월 후	36개월 후
10%	15%	15%	15%	15%	15%	15%

※ 금회 공급필지는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 대상이므로,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등 납부 시 각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금 외 할부금은 균등분할하되 십만 원 단위로 하며,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포함합니다.
- ②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계약서상 납부계좌로 입금 (반드시 계약자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필지분할 불가)

▶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① 할부이자 : 연 3.5% (현행)

- 할부이자 기산일(면적정산기준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이후 매 납부약정일마다 할부일수만큼 미 납잔대금(할부원금)에 대하여 할부이자를 부리합니다.

※ 토지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할부이자는 공사에서 추정한 면적정산기준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면적 정산기준일(또는 토지사용승낙일)에 따라 할부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선납할인 : 연 5% (현행)

- 매매대금을 할부이자 기산일 이전에 납부하기로 한 날(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해 드리며, 할부이자 기산일 이후에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 만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으나, 원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매매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우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연 7.5% (현행)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산정방법 등

- ①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요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향후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변경 시 별도 안내),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 산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합니다.
- ② 매수자가 납부하는 매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부터 지연 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8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토지사용	면적정산
2027.12.31. 이후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 및 대금완납 완료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후

▶ 토지사용

- ①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점을 인지 및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② 조성공사 및 사업 준공 일정이 변경(연장)될 경우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연기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적정산

- ①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확정측량 결과 필지선형 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면적정산 기준일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우리공사의 내규에 의합니다.

▶ 소유권이전

- ①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공사 및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준공일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 잔금약정일 이전에 사용승낙 등을 위해 잔여 잔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면적정산 등 추가 수납(환수) 대상 잔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수납금액을 완납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추후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금완납 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합니다.

9

명의변경

- ①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르며, 향후 정부정책 또는 법령,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고 부동산실거래신고 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향후 정부정책 또는 법령,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명의변경 시 기간이 도래한 중도금은 모두 납부된 상태이어야 하며, 연체된 경우 연체가 해소 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명의변경(생략등기)은 불가합니다.
- ④ 2인(법인) 이상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매수인(법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법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 중 일부의 명의변경이 전매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계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⑤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매 당사자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처벌,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체결 시와 명의변경 전 전매행위제한사항준수확인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 전매관련 유의사항

- ☐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동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0

주요세금 및 중도금대출 등

주요 세금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취득세)** 금회 공급토지는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상(연부취득)**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최종잔금납부 예정일·토지대금완납일(대금정산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상 토지대금의 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도 이에 준용합니다. 매매대금 완납 전이더라도 최종 약정일 경과시에는 우리공사에서 먼저 대납하고 추후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공사에 대납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합니다.
- ③ **(인지세)** 용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④ 우리공사에서는 토지분양대금 및 건축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먼저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출추천서 발급은 대출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 또는 20% 이상을 납입하여야 가능**). 또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해당 은행 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기에 대출 실행된 금액은 우리공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대출실행 전에 납기금액과 대출입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기금액과 대출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우리공사에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연체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11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지구로서, 매수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매도인(공유지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추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매도인 지분변경(계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매수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및 부속서류, 지구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 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인구·교육 등)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관계 도면,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및 주요계약 조건 등을 숙지 및 승인하는 조건으로 공급신청 하여야 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및 용지매매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우리공사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공급대상 필지는 본 공급공고문, 공사내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지(택지)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하기로 합니다.
- ④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⑤ 공급용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입필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⑦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불허되는 건축물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결정 도면을 참고하거나 해당 지자체(도시계획과·건축과 등)에 반드시 문의·확인하신 후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⑧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에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⑨ 건축 시에는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지정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교육환경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개발, 공사 및 건축 관련 유의사항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상기 사항을 확인, 승인하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① 매수자는 매매계약서,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내용,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등), 관계 도면, 건축 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사항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매수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사항, 공급토지 및 타필지의 계획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책임은 매수자가 수인하여야 합니다.
 - ②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69호(‘25.11.24)에 따라 지구계획(4차) 변경 승인되었으며, 매수자는 고시된 인·허가 사항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준공시까지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노선, 시행시기 등) 등은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토지 및 지구 내 타 필지의 토지이용계획(면적, 획지, 형상, 위치, 용도 등) 및 토지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이 변경될 경우 매수자는 이를 수인·반영하여야 합니다.
-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예정으로 향후 최종 고시된 내용을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해당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는 ‘23.05월 착공되었으며, 각종 사업 추진여건 변동(인허가 변경, 법정보호종 포획 및 이주, 소하천공사 등)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 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④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공사 중 각종 지장물, 사업계획 변경, 토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바, 매수자는 변경된 공사계획을 수인·반영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수립, 건축공사 착공 등의 단계에서 우리 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⑤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내용이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또는 승인된 내용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을 포함한다.) 및 부천시 관련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본 사업지구 내 시행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또는 건축허가 결과에 따라 부지 내측

으로 설치되는 가·감속차로 설치면적은 용지 공급면적에 포함됩니다.

- ⑥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각종 현황(형상, 고저차이,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문화재 등),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절토 및 사토처리, 암반의 제거 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우리 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⑧ 본 사업지구 북측 경계로부터 약 0.7km 이격하여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지구 일부구간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22호에 따라 안테나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관련법령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및 높이 완화에 실효성이 없어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⑨ 본 사업지구는 김포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사현장 내 가설구조물(타워크레인 등) 설치시 한국공항공사와 사전협의 및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가설구조물로 인한 항공기 전파영향, 항행안전시설 비정상 동작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용 중지 및 회피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⑩ 본 사업지구 내 대장-홍대선 철도노선 역사 2개소가 위치하며, 해당 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별개 사업으로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공사·운영 등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⑪ 본 사업지구 북서측경계에 인접하여 굴포하수처리장(북부수자원생태공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처리 등) 등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악취 및 소음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⑫ 본 사업지구 북측에 군부대(탄약고)가 위치해 있어 향후 건축행위 추진 시 관할부대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⑬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 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⑭ 매수자는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⑮ 건축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시 토지 경계에 대하여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⑯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법령 및 지자체 조례, 현장여건 등으로 최대 허용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각 간선시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⑮ 조성공사 설계 시 시행한 지반·토질조사결과 자료를 확인·참고하되 암반분포 현황 등 실제 지반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건축사업(주택사업 포함) 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지반조사는 건축시행자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⑯ 매수자는 연약지반처리 등 토지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시 지역 냉·난방과 관련된 사항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시 에너지공급계획에 대하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⑱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관련 설계 시행 시 본 지구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 ⑳ 모든 기반시설(우수·상수·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포함)은 해당공사 준공 전에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와 사용개시일은 각 시설물 관리청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㉑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본 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입회를 요청하고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사업시행자 요구 시 지하 매설물 CCTV 촬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시행자의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
- ㉒ 건축 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 매수인은 사전에 본 지구 사업시행자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관할경찰서 협의 별도)
- ㉓ 건축공사 등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전에 본 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㉔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 이외에 설치할 경우는 본 지구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된 시설물 및 무단점유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㉕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㉖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시 인접도로에 매설된 관로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 터파기용 가시설 설치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와 반드시 협의 후 대상부지에 접하는 도로구역(지상 및 지중포함), 녹지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 ㉗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및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㉘ 건축공사 및 토지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토, 오수, 폐기물, 민원 등은 신청인(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인근 토지의 건축공사 착공 및 사용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입 등에 대한 민원 및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㉙ 건축공사 및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환경시설 설치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③② 원지반(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립폐기물 발생 즉시 사업시행자의 확인 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토지관리는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 ③③ 우기 시 단지 내 토사가 단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토사유출방지막, 임시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③④ 본 지구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시행 중 공공사업과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이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③⑤ 건축물 지하층 청소수 등의 오수와 부력 방지 등을 위한 지하수는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처리되도록 하고, 지하수는 우수로 배제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③⑥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으로, 조성사업 후 확정측량 결과 등으로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여부 및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합니다.
- ③⑦ 지구계획 승인도서, 각종 설계도, 영향평가서 등 열람 자료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의 분양 정보(청약>토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스템 관련 문의	신청 및 공급 관련 문의	인·허가 사항 및 조성공사 관련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LH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팀 ☎ 032-721-2027	LH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 032-721-2065

2026. 10. 06.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